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54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황운하 · 김준형 · 문대립
박은정 · 백선희 · 서영석
서왕진 · 신장식 · 이해민
정춘생 · 최혁진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관리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 여건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임을 명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 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 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 ----- ----- ----- ----- ----- ----- -----

제출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34조제4항</u> 에 따라 지반침 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3. <u>제34조제5항</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